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765 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권영진·조승환·주진우

엄태영 • 윤한홍 • 조경태

이만희 • 정성국 • 박정하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 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 가를 주어야 하며,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,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.

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,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, 제37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57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"6일"을 "30일"로, "2일"을 "15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
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, 징 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제39조제3항제3호의2 중 "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"를 "난임 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15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난임치료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----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 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 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<u>2일</u>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<신 설>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 ② ~ ④ (생 략) 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 제37조(벌칙) ① (생략) 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2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~ 9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제39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

-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. (생략)
- 3의2.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<u>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</u>한 경우

4. ~ 9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②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2의3.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
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
고,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
한 경우
3. ~ 9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_, ,
③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
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
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
중 최초 15일을 유급으로 하
지 아니한 경우
4. ~ 9. (현행과 같음)
- 0. (E 0) E D/

④·⑤ (현행과 같음)